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779
----------	-------

제출년월일 : 2022. 1. 6.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제안이유

- 공설 장사시설의 수급 및 이용자 다수 요구에 따른 봉안시설 사용자 자격 확대
- 「유족 부담 경감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급제도 개선」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주요내용

- 기존 개인단 봉안시설에 안치된 자의 배우자를 합골할 수 있도록 봉안시설 사용 자격 확대 (안 제5조제1항제11호)
 - 최초 사용 신청시 부부단 신청 자격이 되지 않아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현재 부부단을 사용할 수 없어 합골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봉안시설이 7단계로 종료됨에 따라 효율적으로 장사시설을 공급하고자 함.
- 합골 안치의 사용기한에 대한 규정 (안 제7조제2항)
 - 합골의 경우 기존 개인단 사용자의 유골과 함께 안치되어 합골 배우자의 사용료를 별도로 징수하지 않으므로 사용기한을 기존 안치된 배우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함.
- 화장장려금 신청기한의 예외 사유 신설 (안 제21조제3항)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천재지변, 질병이나 그 밖에 사유로 기한 내 화장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함.

개정조례안 : 붙임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2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3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수반사항 : 붙임4(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21. 10. 27. ~ 2021. 11. 16. (20일간)
- 기타 참고사항
 - 현행조례 : 붙임5
 - 방침결정문 : 붙임6

< 붙임 1 >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기존 개인단 봉안시설에 안치된 유골의 배우자 유골을 합골하고자 하는 경우 (이 경우 부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 중 “기준”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합골의 경우에는 먼저 안치된 배우자를 기준”으로 한다.

제2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노인복지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노인복지과장 김 춘 근
	담당·팀장 직위·성명	장묘문화팀장 김 용 선
	담 당 자 성명·전화	전 연 희 (행정 2836)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사용자의 자격 및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에 안치될 수 있다.</p> <p>1. ~ 10. (생략)</p> <p><u><신설></u></p> <p>11. (생략)</p> <p>② ~ ⑥ (생략)</p> <p>제7조(공설장사시설의 설치기간 등) ① (생략)</p> <p>② 합장·부부단·부부장·가족장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설치 및 사용기간은 사용 신고한 인원 중 마지막으로 매장·봉안·자연장한 자를 <u>기준</u>으로 계산한다.</p> <p>③ ~ ⑤ (생략)</p> <p>제21조(신청방법) ①·② (생략)</p> <p><u><신설></u></p>	<p>제5조(사용자의 자격 및 제한) ① --- ----- ----- --.</p> <p>1. ~ 10. (현행과 같음)</p> <p>11. <u>기존 개인단 봉안시설에 안치된 유골의 배우자 유골을 합골하고자 하는 경우 (이 경우 부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12. (현행 제11호와 같음)</p> <p>② ~ ⑥ (현행과 같음)</p> <p>제7조(공설장사시설의 설치기간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u>기준</u>으로 계산하며, 합골의 경우에는 먼저 <u>안치된 배우자를 기준</u>-----.</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제21조(신청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u></p>